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 여성위원 :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노력(안 제2조제4항)
-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안 제5조)
 - 회의소집일 통보 :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 통지(안 제5조제2항)
 -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안 제5조제4항)
 -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5항)
- 위촉위원의 해지(안 제6조제3항)
 - 위촉된 업무를 대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 관한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2조제4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4항은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개진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폐지된 통합조례 제3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장의 회의소집권과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통지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는 물론 위원의 연임과 위촉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 역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동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와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라 하는 것은 “기간 내에서”처럼 시간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안”이라 하는 것은 “범위 안에서”처럼 면적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치입법편람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도 “내”와 “안”을 모두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안도 이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